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5가단503598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2016. 1. 26.

판결 선고2016. 3. 22.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9,549,986원과 그 중 86,204,846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E 사이에 2014. 10.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10. 16. 접수 제437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9,549,986원과 그 중 86,204,846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 보증번호 F,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10. 4.(차후 2014. 10. 2.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85%)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2013. 6.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 이후는 연 14%)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5/1000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4. 8. 31.경부터 이자연체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2014. 10. 2. 원금연체로 대출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4. 11. 17. 중소기업은행에 86,204,846원(=원금 84,992,511원+이자 1,212,3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3,345,140원이다.

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의 모친이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C은 자신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43794호로 2014. 10.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소외 G(피고 C의 남편)으로 된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9,549,986원(=대위변제금 86,204,846원+법적절차비용 3,345,140원)과 그 중 86,204,84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11.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9. 16.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볼 수 없었음에도 원고 측은 위 약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및 약정서사본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9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마지막 면에 '약정서 설명을 듣고 사본을 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아래에 피고 C이 본인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함께 자필서명을 하고 담당직원의 확인까지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분은 피고 C이 약정서의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본을 교부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갑 1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는 피고 회사로서 피고 C은 당시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을 뿐 아니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 B은 피고 C의 아들이었던 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물론 피고 C의 남편인 G도 함께 참석하였던 점 등까지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C은 약정서의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C이 당시 시각장애 1급 상태였던 사정,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용지에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달리 피고 C의 간인서명이 되어있지 않다는 사정 등 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E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14. 10. 2.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의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 체결되고 불과 1개월 후인 2014. 11. 17. 원고가 위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계약은 당시 이미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성립되어 있었거나, 혹은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기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된 후 가까운 장래에 구상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후 실제로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사전구상권 및 사후구상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그 결과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처분행위로 채무초과의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이미 사해행위는 성립한 것이고 원고의 대위변제가 그 후에 이루어졌다 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0473 판결 등참조).

갑 11 내지 갑 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계약 당시 피고 C은 시가 893,750,000원 상당(원고가 KB부동산 과거시세보기 자료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 E이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70,555,690원 상당(원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 E이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의 상주시 H 임야 227599㎡가 있었던 사실, 한편 당시 피고 C의 소극재산으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44,605,000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대한 금액 불상의 압류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 4억 4,000만 원(=접수번호 제28291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접수번호 제44402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원고에 대한 위 사전 또는 사후구상금채무 86,204,846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524,305,690원 $\{=(893,750,000\text{원}-4\text{억 } 4,000\text{만원})+70,555,690\text{원}\}$ 이고, 피고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330,809,846원 $(=244,605,000\text{원}+86,204,846\text{원})$ 이었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경료해 주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소극재산은 330,809,846원임에도 위 책임재산 중 70,555,690원만이 남게 되는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각 사해행위가 되고, 나아가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C과 피고 회사, 피고 B 사이의 관계와 재산상태, 피고 C의 재산처분 시기 및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시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이처럼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자신 소유였던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그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신탁 재산에 불과하여 피고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C과 G이 부부 사이인 사정,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가 G인 사정 등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은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의 재산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의 책임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E은, 1990.경부터 알고 지내온 G에게 2004.말경 4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1년 후 상환받은 적이 있고, 2010. 5.초경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G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2013. 9. 12.부터 2014. 1. 14.까지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상황에서 G이 2014. 8.초경 피고 C 명의로 신탁되어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추가 5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결국 피고 E은 G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 잔액 2억 5,000만 원과 장래 대여금채권 5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받은 것이고, 피고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457 판결, 위 대법원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과 알고 지내온 기간, 2회에 걸쳐 고액의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당초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 E은 G과 깊은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G과 피고 C은 부부 사이인 점, ② 피고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E은 위 5억 원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 외에는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다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자 그 직후 이 사건 근저당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대여금채무의 잔액이 2억 5,0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채권최고액을 9억 원으로 설정받았는바, 그 기간 동안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거액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생긴 것 외에는 피고 C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과다하게 설정한 담보를 제공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 E은 추가로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여금채권도 수년이 지나도록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고액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가대여가 이루어진바 없고, 이에 관한 처분문서 등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마 1-1 내지 을마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 E이 G에 대하여 기존 5억 원의 대여금채권 중 2억 5,000만원이 잔존해 있었고, 위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계약 당시 피고 E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근저당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한대균

별지